



분류기호 문서번호	문화 35300-111	전 결 규정	조 항 전 결 사항
처리기간		시	장
시행일자	85. 11.		
보존연한	영구		

보조기관	부시장	문화담당관	법무담당관	
기안책임자	이수근			

경유	각안참조		
수신	각안참조		
참조			
제목	서울특별시 유형문화재 지정 및 해제		

제 1 안
수신 내부결재
제목 동 건

1. 1985년 9월 26일과 1985년 11월 7일 개최한 서울특별시 문화재 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별첨 고시(안)내용과 같이 서울특별시 유형문화재를 지정 및 해제하고 별안과 같이 시행코져 합니다.

가. 서울특별시 유형문화재 지정 및 해제목록 : 별첨 고시(안)

나. 근거법 - 문화재 보호법 제 55조 및 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조례

제 7조 규정에 의거 서울특별시 유형문화재 지정 및 동 보호조례 제 13조 규정에 의거 서울특별시 유형문화재 해제하고 동 보호조례 제 10조 규정에 의거 시행코져 합니다.

첨부 고시안 1부. 끝.

제 2 안

수신 수신처 참조

제목 서울특별시 문화재 지정통보

주무과발송

1. 문화재 보존사업의 일환으로 다음과 같이 문화재 보호법 제 55조 및 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조례 제 7조의 규정에 의거 아태와 같이 귀 사찰내의 불전을 서울특별시 유형문화재로 지정하였음을 알려드리오니 원형대로 잘 보존하여 후대에 길이 남겨줄수 있도록 문화재 보호에 관한 관계법규를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지정내용 ; 제 1안 가항이기 시행

첨부 지정서 5부. 끝.

수신처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73번지 봉은사 주지

서울시 도봉구 수유동 487번지 화계사 주지

서울시 성북구 돈암동 595 흥천사 주지

서울시 서대문구 봉원동 1번지 봉원사 주지

계: 3 안

수신 문화공보부장관

참조 문화재 관리국장

제목 서울특별시 문화재 지정및 해제 통보

1. '85. 11. 7. 서울특별시 문화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과 같이 서울특별시 문화재 지정및 해제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가. 지정내용 : 제 1안 가항이기 시행. 끝.

계 4 안

수신 수신처참조

관인생략

참조 총무과장

제목 서울특별시 문화재 지정 및 해제 통보

1. 문화재 보호법 제 55조 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조례 제 7조 및 동 보호
조례 제 13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서울특별시 유형문화재 지정 및 해제 하였
음을 통보하니,

2. 보존관리에 관련되는 해당과 (세무1과, 도시정비과, 시민봉사실, 건축
과, 공원녹지과 등) 및 관할 동사무소에 통보하여 관계공부를 기록정리할 것이며 향
후 문화재 보존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

가. 지정내용 : 제 1안 가항 이기 시행

수신처 도봉구, 성북구, 서대문구, 강남구, 동대문구

제 5안

수신 수신처 참조

발신 문화담당관

제목 서울특별시 문화재 지정 및 해제 통보

1. 문화재 보호법 제 55조 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조례 제 7조 및 동 보
호 조례 제 13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서울특별시 문화재 지정 및 해제 하였음
을 통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지정내용 : 제 1안 가항이기 시행

수신처 세정과, 도시계획과, 시설계획과, 건축지도과, 재개발과, 공원과, 녹지과
구획정리과, 올림픽시설담당관

제 6 안

수신 총무처장관

제목 관보 게재 의뢰

1. 별첨 고시본과 같이 서울특별시 문화재 지정 및 해제 하였기 재산 소유자

2092

및 관리자 에게 봉지코저 관'보에 게재 의뢰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고시문 2부. 끝.

제 7 안
687

수신 공보관

발신 문화담당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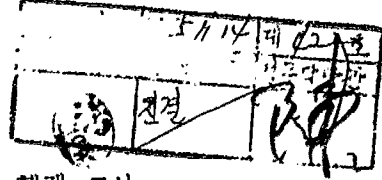
제목 시보 게재 의뢰

1. 별첨고시문과 같이 서울특별시 문화재 지정및 해제 하였고 재산 소유자 및 관리자에게 봉지코저 시보에 게재 의뢰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고시문 2부. 끝.



서울특별시 고시 제 호



서울특별시 유형문화재 지정 및 해제 고시

문화재 보호법 제 55조 및 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조례 제 7조 및 동 보호조례 제 13조 규정에 의거 서울특별시 유형문화재를 다음과 같이 지정 및 해제하고 서울특별시 문화재보호조례 제 10조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고시한다.

1985. 12. 5.



서울특별시 장

1. 서울특별시 유형문화재 지정 목록

종 별	지정번호	명 칭	지정물건	소 재 지	구조및규모	관 리 자
서울특별시 유형문화재	제 64호	봉은사선불당	1 동	강남구삼성동 73번지	목조와가 58평	조계종봉은사주지
"	제 65호	화계사대웅전	1 동	도봉구수유동 487번지	목조와가 18평	조계종화계사주지
"	제 66호	홍천사극락보전	1 동	성북구돈암동 595번지	목조와가 17평	조계종홍천사주지
"	제 67호	홍천사명부전	1 동	"	목조와가 11평	"
"	제 68호	봉원사대웅전	1 동	서대문구봉원동 1 번지	목조와가 24평	태고종봉원사주지

2. 서울특별시 유형문화재 해제 목록

종 별	지정번호	명 칭	수량	소 재 지	규 격	해 제 사 유
서울특별시 유형문화재	제 58호	수 표 석	1 기	세종대왕기념관	높이 약 3m 폭 약 20cm	. 85년 8월 보물 제 838호로지정

24/11